#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015 발의연월일: 2024. 9. 13.

발 의 자:김선교·김상훈·구자근

김석기 • 김성원 • 김위상

서천호 • 최수진 • 김예지

이헌승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사기관 등의 지방 공사의 임직원에 대한 수사 개시·종료 통보 대상을 직무와 관련된 사건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공사 임직원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현행법상 일부 범죄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등 높은 수준의 책임성이 요구되고, 특히 성범죄나 스토킹범죄, 마약류 및 음주운전 관련 사건과 같이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중대 범죄에 관해서는 그 사실을 해당임직원이 근무하는 기관에 통보하여 징계의 사각지대를 개선하여야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도 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수사기관 등의 수사 개시·종료 통보 대상에 성비위행위, 스토 킹범죄, 마약류에 관한 범죄 및 음주운전에 관한 사건을 추가하여 임 직원의 도덕성·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2).

법률 제 호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공사 또는 공단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을 "감사원, 검찰·경찰과 그 밖의 수사기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 또는 공단의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하며, 같은 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직무와 관련된 사건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관련 비위행위와 관련된 사건
  -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 지행위
  -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 력범죄
  -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 관련 비위행위
- 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

킹범죄와 관련된 사건

-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 4조까지, 제65조의2에 따른 범죄와 관련된 사건
-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 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사기관등의 수사 개시·종료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사 또는 공단의 임직원에 대하여조사나 수사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제80조의2(수사기관 등의 수사 제80조의2(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종료 통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 관은 공사 또는 공단의 임직원 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된 사건 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 의 이사장에게 해당 사실과 결 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했

혅

- 1. 감사원
- 2. 검찰 · 경찰 및 그 밖의 수사 기관
- 3. 행정안전부장관
- 4. 지방자치단체의 장

개 정 아

등 개시·종료 통보) 감사원, 검찰ㆍ경찰과 그 밖의 수사기 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공사 또는 공단 의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거----

- 1. 직무와 관련된 사건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관련 비위행위와 관련된 사건
  - 가. 「성매<u>매알선 등 행위의</u>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금지행위
  -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에 관한 법률」 제2조제2 호에 따른 아동 · 청소년대

상 성범죄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 관련 비위행위
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와 관련된 사건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의 2에 따른 범죄와 관련된 사건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